

디지털 유산 보존에 관한 헌장

서문

총회는

유산의 소실은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에 유산의 피해를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유네스코 헌장이 유네스코는 책, 예술작품, 역사 및 과학 기념물 등의 세계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지식을 유지, 증진, 보급해야 하고, 유네스코의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 사업(Information for All Programme)은 정보정책 및 기록된 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의와 행동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유네스코의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사업은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과 보편적 접근용이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함을 상기하고,

정보 및 창조적 표현의 원천이 점점 더 디지털 형태로 생산, 배포, 액세스, 유지됨으로써 디지털 유산이라는 새로운 유산이 생성되었음을 인식하고,

디지털 유산으로의 액세스가 사람들이 서로 지식을 창출, 교류, 공유할 기회를 넓힐 것임을 의식하고,

디지털 유산이 소실 위험에 처해있음을,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디지털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긴박한 문제임을 이해하여,

아래의 원칙들을 선포하고 본 헌장을 채택한다.

공공유산으로서의 디지털 유산

1조 - 범위

디지털 유산은 인류의 지식과 표현의 독특한 자원들로 이루어진다. 디지털 유산은 디지털로 창출된 기술적, 법적, 의학적 정보 및 그 밖의 정보, 또는 현존하는 아날로그 자원의 디지털 전환형식과 함께,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 행정적 자원을 포괄한다. 자원이 “태생적으로 디지털”이라 함은 디지털로 된 대상물 외에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자료들은 넓고 증가하는 형태의 범위 중에서도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사진, 동영상, 음성, 그래픽, 소프트웨어, 웹페이지를 포함한다. 디지털 자료들은 대개 단명하며, 존속을 위해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유지,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자원들은 대부분 지속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니므로, 현세대와 차세대를 위해 보호,

보존되어야 할 유산에 속한다. 디지털 유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언어, 장소, 지식과 표현의 영역을 막론하여 존재할 수 있다.

2조 - 디지털 유산으로의 액세스

디지털 유산 보존의 목적은 대중이 디지털 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 자료, 특히 공공영역 자료로의 액세스는 부당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는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유관기구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법적, 실천적 환경 조성을 장려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으로의 액세스를 최대화할 수 있다. 생산자, 기타 권리소유자의 적법한 권리와 디지털 유산 자료로 액세스하려는 대중의 이권 간의 공평한 균형이 국제규범과 협정에 의거하여 재표명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유산소실 방지를 위한 보호

3조 - 손실의 위협

세계의 디지털 유산은 손실되어 후손에게 물려지지 못할 위협에 처해 있다. 디지털 유산을 실현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쇠퇴, 유지와 보존을 위한 자원, 책임, 방법의 불확실성, 법적지원의 부재 등이 이를 촉진하는 요소이다.

태도의 변화는 기술변화에 뒤처져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기적절한 보존전략을 개발하기에 디지털 진화는 과도하게 빨랐고 비용부담이 컸다. 미래를 구성할 디지털 유산의 경제적, 사회적, 지적, 문화적 잠재성이 받는 위협은 완전히 파악되지 못했다.

4조 - 행동의 필요

팽배해 있는 위협이 해결되지 않으면, 디지털 유산의 손실은 급속할 것이며 불가피할 것이다. 유산보존을 위한 법적, 경제적, 기술적 수단을 촉진하는 것은 회원국들에게 이로울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잠재력과 보존의 실용성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일반대중의 관심을 자극할 인식제고와 지원책이 시급하다.

5조 - 디지털적 연속성

디지털 유산의 연속성은 중요하다. 창출부터 액세스까지라는 디지털 정보의 수명 동안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처가 분명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대상물을 생산

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의 고안이 디지털 유산 장기보존의 시작이다.

필요한 조치들

6조 - 개발전략과 정책

시급한 정도, 지역적 환경, 가용한 수단, 장래에 대한 예측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유산 보존 전략과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저작권 및 관련권리소유자와 기타 관계자들이 공동의 기준, 호환성, 자원공유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때 촉진될 것이다.

7조 - 유지할 대상의 선정

모든 기록유산이 그러하듯, 어떤 디지털 자료를 유지할 지에 대한 주요기준은 자료의 중요성, 지속적인 문화적, 과학적, 증거적 혹은 그 밖의 가치 등이 되겠지만, 선정원칙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태생적으로 디지털”인 자료들에 명백히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선정결정과 뒤따른 검토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규정된 원칙, 정책, 절차,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8조 - 디지털 유산의 보호

회원국들은 디지털 유산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제도적 체제를 필요로 한다.

국가보존정책의 중요한 요소로서, 아카이브 관련법 및 도서관, 문서보관소, 박물관 등 공공보관소에 제도적, 자발적으로 기증되는 대상항목들 안에 디지털 유산을 포함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기증된 디지털 유산 자료로의 액세스는 합당한 제약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출처의 분명함을 위한 법적, 기술적 체제는 디지털 유산의 조작이나 의도적인 수정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법적, 기술적 체제는 분명한 출처의 기록 확보가 가능한 정도까지 콘텐츠, 파일기능성, 증거서류 등을 유지하도록 한다.

9조 - 문화유산의 보존

디지털 유산은 태생적으로 시간, 지역, 문화,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디지털 유산은 문화특이적이지만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다.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을 향해, 개인이 세계의 청중을 향해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책임

10조 - 역할과 책임

회원국들은 하나 이상의 기관이 디지털 유산 보존에 대한 조정의무를 맡도록 하고, 필요한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와 책임의 공유는 현행 규칙과 전문성에 근거할 수 있다.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a)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지털 자료의 창작자, 출판자, 제작자, 보급자 및 다른 민간부문 파트너들이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해 국립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그 밖의 공공유산기관과 협력하도록 촉구한다.

(b) 훈련과정과 연구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과 전문협회들이 서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도록 한다.

(c) 국립 혹은 사립의 대학교와 연구기관들이 연구데이터의 보존을 보장하도록 장려한다.

11조 - 파트너십과 협력

디지털 유산의 보존은 정부, 창작자, 출판자, 관련 산업계, 유산기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로 한다.

모든 국가가 현재의 디지털 격차에 대처하여 디지털 유산의 창작, 확산, 보존, 지속적인 접근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과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계, 출판자, 대중매체는 지식과 기술적 전문성을 증진하고 공유하도록 촉구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장려, 자원공유 협정, 연구결과와 모범사례의 보급은 디지털 보존 기술로의 액세스를 민주화할 것이다.

12조 - 유네스코의 역할

유네스코는 임무와 기능상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a)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현장의 원칙들을 고려하고, 이 원칙들이 국제연합 체제 내부에서, 또한 디지털 유산 보존 관련 정부간 기구 및 국제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실시되도록 장려한다.

(b) 회원국, 정부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민간부문이 함께 모여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한 목표, 정책, 프로젝트를 고안할 수 있는 참조점 및 토론장의 역할을 한다.

(c) 디지털 유산 보존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인식제고, 역량강화를 촉진하고, 기준이 될 윤리적, 법적, 기술적 지침을 제안한다.

(d) 본 헌장 및 지침 실시 후 향후 6년간 얻어진 경험에 근거하여 디지털 유산 증진과 보존을 위한 규약이 더 필요한지 결정한다.